



김재훈의 세무상식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은 익년 4월 말까지이다.

대부분의 법인들이 12월 결산법인으로 2018년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기한은 이번달 말일까지인데 법인세 신고시 꼭 확인 할 사항을 소개하고자 한다.

법인세 신고시 결산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첨부하게 되는데 여기서 매월 신고해 온 갑근세, 원천세, 부가세 등 신고내역과 결산서사상 숫자는 일반적으로 일치하게 되어 있다.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결산시 원인을 찾아 봄야 하겠다.

일반적으로 손익계산서 항목에서 매출은 매월 신고된 부가세 신고서 상 금액 합계액과 손익계산서의 매출 금액이 일치하는지를 우선 확인하여야 한다.

부가세 과세대상 업체가 아니고 낸 매출액이 48억 루피아 이하인 경우에는 매월 매출액의 0.5% (2018년 상반기)는 1%를 납부한 FPh4(2) 금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하겠다.

인간비는 12월 갑근세 신고분과 확인을 하여야 한다. 복리후생비 등 개인용도의 자출에 대하여 갑근세를 납부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차이에 대해서는 원인을 확인하여야 한다.

그외 회계처리상 부동산 임차료로 처리가 되어 있다면 발생된 시점에 원천세(FPh4(2)) 신고 금액과 확인을 하여야 한다.

기타 컨설팅, 자문료, 사용료(로열티), 이자비용, 기타 용역비(서비스대금)에 대해서도 발생된 시점에 원천세(FPh23/FPh26) 신고 금액과 확인을 하여야 한다.

기타 비용 계정이나 수익항목에 특이한 금액들이 있는지도 확인을 하여야 한다.

대차대조표 항목에서도 채권, 채무, 재고자산, 고정자산, 선납부가세, 예수금 등 확인을 하여야 하겠다.

상기와 같이 회계처리와 매월 세무신고된 내역과 cross check 을 한 후 세무조정을 하여야 한다.

회계처리는 회계기준에 따라 처리된 것이지만 세금은 회계처리상으로 수익을 잡았는데 수익에서 제외 할 것

## 법인세 신고시 확인 할 사항

도 있고, 비용으로 처리를 하였는데 비용으로 인정이 되지 않거나 유보(이월)시켜야 하는 항목들이 있다. 따라서 회계 처리된 사항에 대해서 세법 규정에 맡게 세무조정을 별도로 하여야 한다.

익금불산입(수익)에서 제외항목으로는 FPh4(2)로 징수된 수익은 세무조정을 통해서 수익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은행에서 받은 이자 수익의 경우에는 이미 Final Tax 로 FPh4(2)를 원천징수 당하였기 때문에 회계처리상 이자 수익으로 처리하였더라도 세무조정을 하여 익금불산입하여야 하고, 부동산을 매각하여 양도 차익이 발생하였더라도 매도시 FPh4(2)로 25%를 납부하였기 때문에 수익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직전년도 48억루피아 이하 영세사업자의 경우 FPh4(2)를 매월 납부하였기 때문에 매출 전액을 수익에서 제외하고 비용도 전액 제외하여야 한다. 건설업의 경우에도 FPh4(2) 적용이 되기 때문에 동일한 방법으로 조정을 하여야 한다.

손금불산입(비용)에서 제외항목으로는 소득세법 9조 1항에 언급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판단 기준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비용 또는 소득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비용은 비용인정이 되고 그렇지 않는 경우 비용인정이 되지 않는다. 또한 비용의 효율기간이 1년을 넘을 경우에는 한꺼번에 비용처리를 할 수 없고 감가상각의 경우에도 장율, 장액법만 인정되기 때문에 달리 처리할 때에는 조정을 하여야 한다.

접대비의 경우에는 법인세 신고시 접대비 명세서(Data Nominal Baya Entertainment)를 작성하여야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세, 법인세 및 과태료 등도 비용인정이 되지 않는다. 중여, 기부금, 충당금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용인정이 되지 않는다.

특히 룸복, 술라웨시 팔루 지진등 재해 성금을 자출하였다면 비용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 또한 최근 9KB이반도주 사건으로 퇴직급여 충당금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사내에 설정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은 비용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 재무부장관



김재훈 대표

령 규정을 충족하여 퇴직보험으로 실제 자출이 된 경우 또는 퇴직급여가 실제 자급되는 경우에만 비용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회계처리상 퇴직급여 충당금을 설정을 하였다고 자출이 되지 않았다면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

이런 조정 과정을 거칠 경우 회계 기준으로 작성된 손익과 세무조정 후 손익은 상당한 차이가 발생되고 법인세는 세무조정 후 손익을 기준으로 과세되며, 이를 근거로 법인세를 산출하고 선납 법인세가 있으면 차감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초과납부가 되었다면 조기 환급 요건(재무부장관령 39호 PERATURAN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39/PMK.03/2018)을 충족하지 못하면 법인세 세무조사 후 환급이 진행된다.〈끝〉

### 학력 및 경력

핀란드 Aalto University School of Business 경영학 석사(MBA)

Sertificate Tax Consultant (Konsultan Pajak)

Brevet A&B, Konsultan Pajak Brevet C from Artha Bhakti

현 인도네시아 Tax Lawyer (Kuasa Hukum Pengadilan Pajak)

현 PT. BNG Consulting 및 PT. Kantor Jasa

Akuntansi Indonesia 대표

현 중소기업진흥공단 인도네시아 세무 자문 위원

현 재인도네시아 한인 상공회의소 세무분과 사무처장 및

고충 상담 위원회 세무 자문

현 한인포스트, 월간건설신문창조, 월간봉제신문(Koga) 세무칼럼

저서

알기쉬운 인도네시아 세법

(2015, 2016, 2018 중소기업진흥공단)

인도네시아전출 우리기업 투자환경 개선보고서

(공지 2016, Kita, Kocham)

TEL : 021 522 2739

e-mail : kimjhoon@bngconsulting.co.kr